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31호 2023. 6. 12. (월)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1
- 정선군 조례 제2959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59
- 정선군 조례 제2960호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64
- 정선군 조례 제2961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69
- 정선군 조례 제2962호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79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381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규칙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85

조 례

제289회 정선군의회(2023. 5. 30.)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5. 1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개정) 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정선군 지능정보화 조례」의 개정) 정선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을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6조(「정선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의 개정)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정선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을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9조(「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2조(「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의 개정)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3조(「정선군 향토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향토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향토학사(이하 “학사”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포학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천동 19-8번지(마포공공기숙사 내)
2. 춘천학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번지(강원대학교 기숙사 내)

제5조제1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4조(「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5조(「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가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7조(「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8조(「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9조(「정선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 지원사업 종합지침 규정」”을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사업 종합지침 규정」”으로 한다.

제20조(「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 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1조(「정선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정선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제22조(「정선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정선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 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로 한다.

제23조(「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강원도” 를 “강원특별자치도” 로 한다.

제24조(「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 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로 한다.

제25조(「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제26조(「정선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정선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관광산업” 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으로, “강원도 관광재단” 을 “강원관광재단” 으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 관광재단” 을 “강원관광재단” 으로 한다.

제27조(「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28조(「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9조(「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의 개정)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0조(「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1조(「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의 개정)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지정문화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 중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로 한다.

제32조(「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3조(「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 무형문화재”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한다.

제34조(「정선군 정선아리랑전수관 운영조례」의 개정) 정선군 정선아리랑전수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 무형문화재”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 무형문화재” 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지사” 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로 한다.

제35조(「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중 “강원도체육회” 를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로, “강원도교육청” 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으로 한다.

제36조(「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 로 한다.

제37조(「정선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 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 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 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강원도” 를 “강원특별자치도” 로 한다.

제38조(「정선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1항” 을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로 한다.

제39조(「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 를 “강원특별자치도” 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강원도지사” 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를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로 하고, 같은 항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을 “강원특별자치도폐광지역개발기금” 으로 한다.

제40조(「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 를 “강원특별자치도” 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을 “「강원특별자치도 농

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1조(「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을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2조(「정선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의 개정) 정선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4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3조(「정선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4조(「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5조(「정선군자연환경보전조례」의 개정) 정선군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6조(「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7조(「정선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로 한다.

제48조(「정선군 건축 조례」의 개정)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강원도 건축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가목 중 “강원도건축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로 한다.
 제20조의2 중 “강원도 건축사회”를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로 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중 “「강원도 건축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강원도 건축사회”를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로 한다.

제49조(「정선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0조(「정선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정선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1조(「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2조(「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의 개정)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53조(「정선군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4조(「정선군농업회의소 운영·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농업회의소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5조(「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제56조(「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7조(「정선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8조(「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설치·운용 조례」의 개정)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9조(「정선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0조(「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개정)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1조(「정선군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강원도 정선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제1조(「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공모사업”이란 국가, <u>강원도</u>,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p> <p>2.~5. (생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u>강원특별자치도</u>, ----- ----- ----- ----- ----- -----.</p> <p>2.~5. (현행과 같음)</p>

제2조(「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u>강원도</u>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p>	<p>제4조(규칙) ----- ----- ----- ----- <u>강원특별자치도</u> ----- -----.</p>

현 행	개 정 안
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 ⑤~⑥ (현행과 같음)

제8조(「정선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방법)① 군수는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u>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한다.</u>	제6조(지원방법)① ----- ----- <u>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u> -----.

제9조(「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u>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7길 16에 둔다.</u>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 ----- <u>강원특별자치도</u> -----.

제11조(「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1. <u>강원도교육청</u> 또는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u>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u> ----- ----- -----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 하였던 사람 2.~4. (생 략) ③~④ (생 략)	----- ----- 2.~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

제13조(「정선군 향토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생 략) 1. <u>마포학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천동 19-8번지(마포공공기숙사 내)</u> 2. <u>춘천학사: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번지(강원대학교 기숙사 내)</u>	제3조(명칭 및 위치) 향토학사(이하 “학사”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마포학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천동 19-8번지(마포공공기숙사 내)</u> 2. <u>춘천학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번지(강원대학교 기숙사 내)</u>
제5조(입사신청자격 및 선발) ① (생 략) 1.~2. (생 략) 3. <u>춘천학사의 경우 강원도 춘천시 소재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일 것.</u> ②~③ (생 략)	제5조(입사신청자격 및 선발)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u>강원특별자치도</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재원) (생 략) 1. <u>강원도</u> 또는 <u>군의 출연금</u>	제3조(기금의 재원) (현행과 같음) 1. <u>강원특별자치도</u> -----

2~7. (생략)	2~7. (현행과 같음)
-----------	---------------

제15조(「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생략)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국가 또는 <u>강원도</u> 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 <u>강원도지사</u> 또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할 마을기업 다~사. (생략) 3~5.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 <u>강원특별자치도</u> ----- ----- 나. ----- ----- ----- ----- ----- <u>강원특별자치도지사</u> ----- ----- ----- 다~사. (현행과 같음) 3~5. (현행과 같음)

제16조(「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4조(사업 및 업무) ① (생략) 1~7. (생략)	제4조(사업 및 업무) ①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② 재단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u>강원도</u> 또는 군의 대행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u>강원도의</u> 대행 사업은 그 사업의 내용,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비의 범위·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p> <p>③ (생략)</p>	<p>② ----- --, <u>강원특별자치도</u>----- ----- ---<u>강원특별자치도</u>----- -----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제17조(「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①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u>강원도지사</u>가 수립한 <u>강원도</u>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① ----- ----- ----- -----<u>강원특별자치도지사</u>----- -----<u>강원특별자치도</u>-----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제18조(「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u>강원도·정선군</u>으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3조(상인회 등록 등) ① -----<u>강원특별자치도</u>-----</p> <p>-----</p> <p>-----</p> <p>-----</p> <p>-----</p> <p>-----</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제19조(「정선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공모신청 및 대상기업 결정) ①~② (생략)</p> <p>③ 군수는 제2항의 선정 업체 중 <u>강원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거쳐 일자리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을 결정한다.</p>	<p>제5조(공모신청 및 대상기업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강원특별자치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p> <p>-----</p>
<p>제7조(사후관리) ①~② (생략)</p> <p>③ 군수는 「<u>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u>」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7조(사후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u>」-----</p> <p>-----</p> <p>-----</p> <p>-----</p>
<p>제10조(준용규정) 일자리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p>	<p>제10조(준용규정) -----</p> <p>-----</p>

현 행	개 정 안
<p>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지원사업 종합지침 규정」에서 정한 바와 「정선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사업 종합지침 규정」----- -----.</p>

제20조(「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 및 대상 등) ① (생략) 1.~3. (생략) ② 군수는 정선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강원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략)</p>	<p>제3조(지원 및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② ----- -----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③ (현행과 같음)</p>

제21조(「정선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1.~3. (생략) 4. 강원도 정선교육청교육장 5.~7. (생략) ②~③ (생략)</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③ (현행과 같음)</p>

제22조(「정선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	-------

<p>제21조(상황보고) ① 군수는 관내에 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 해 <u>강원도지사</u> 및 소방방재청장 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 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p>	<p>제21조(상황보고) ① ----- ----- -<u>강원특별자치도지사</u>----- ----- ----- ②~③ (현행과 같음)</p>
---	---

제23조(「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생략) 1.~4. (생략) 5. <u>강원도</u>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이라 한다)의 장에 게 지원요청</p>	<p>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u>강원특별자치도</u>----- ----- -----</p>

제24조(「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등) ① (생략) 1.~2. (생략)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u>강원도지사</u>가 위험도평가 실 시를 요청한 경우 ② 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결정 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p>	<p>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등)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 <u>강원특별자치도지사</u>----- ----- ② ----- -----</p>

현 행	개 정 안
기관의 장, <u>강원도지사</u> 및 관련 학·협회 등에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지한다. ③~④ (생략)	----- <u>강원특별자치도지사</u>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의회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u>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u> 3~9. (생략) ③ (생략)	제3조(협의회 구성) ①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u> <u>교육장</u> 3~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정선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정선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강원도 관광산업</u>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정선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 <u>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u> ----- ----- ----- -----

현 행	개 정 안
<p><u>강원도 관광재단</u>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강원관광재단</u>----- -----.</p>
<p>제2조(재정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u>강원도 관광재단</u>(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p>	<p>제2조(재정지원) ----- ----- <u>강원관광재단</u>----- ----- -----.</p>

제27조(「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문화관광해설사”란 「<u>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u>」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자(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말한다.</p> <p>2.~5. (생략)</p> <p>제20조(직무 및 표식) ① 해설사의 직무, 표식은 <u>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u>에 따른다.</p> <p>② (생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u>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u>」----- -----.</p> <p>2.~5. (현행과 같음)</p> <p>제20조(직무 및 표식) ① ----- -----<u>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u>----- -----.</p>

현 행	개 정 안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2(명칭 및 위치) (생략)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현행과 같음)
1. 화암관광지는 <u>강원도</u> 정선군 화암면 약수길 1300 일원으로 한다.	1.----- <u>강원특별자치도</u> ----- ----- -----.
2. 아우라지 관광지는 <u>강원도</u>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69 일원으로 한다	2.----- <u>강원특별자치도</u> ----- -----.

제29조(「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역) 휴양단지는 탄광지역 진흥대책 및 진흥지구 사업비로 조성된 휴양단지와 <u>강원도</u> 에서 실시계획 승인되어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역) ----- ----- ----- <u>강원특별자치도</u> ----- ----- -----.

제30조(「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립 및 명칭·위치) (생략)	제4조(설립 및 명칭·위치)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아리랑박물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51	2. ----- <u>강원특별자치도</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31조(「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문화재보호법·</u> 제24조 및 제70조와 <u>·강원도 문화재</u> <u>보호조례·</u>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 및 <u>강원도</u> 지정 무형 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강원특별자치도 문</u> <u>화재 보호조례</u> 」----- ----- <u>강원특별자치도</u> ----- ----- ----- -----.
제2조(정의) (생략) 1. “무형문화재”란 국가지정문 화재나 <u>강원도지정문화재</u>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문화 재를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u>강원특별자치도지정</u> <u>문화재</u> ----- ----- -----.
제12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 및 선정) ① 군수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을 추가로 인정 또는 선정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종목의 보 유자(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12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 및 선정) ①----- ----- ----- -----

현 행	개 정 안
<p>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 또는 <u>강원도지사</u>에게 추천서를 제출한다.</p> <p>② (생략)</p> <p>제13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해제) 군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사람의 무형문화재 해제 등을 문화재청장 또는 <u>강원도지사</u>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1.~4. (생략)</p> <p>제16조(준용) 그 밖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과 「<u>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u>」 및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p>	<p>----- -----<u>강원특별자치도지사</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해제) ----- ----- ----- ----- ----- -----<u>강원특별자치도지사</u>----- -----.</p> <p>1.~4. (현행과 같음)</p> <p>제16조(준용) ----- ----- ----- ----- 「<u>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u>」 ----- -----.</p>

제32조(「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정선문화원”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 -----</p>

<p>따라 <u>강원도지사의</u>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지방문화원을 말한다.</p> <p>2.~3. (생략)</p>	<p>-----<u>강원특별자치도지사</u>-----</p> <p>-----</p> <p>-----</p> <p>-----</p> <p>2.~3. (현행과 같음)</p>
---	--

제33조(「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이 조례는 정선군이 <u>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u>을 보존·육성함으로써,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u>-----</p> <p>-----</p> <p>-----</p> <p>-----</p> <p>-----</p> <p>-----</p>

제34조(「정선군 정선아리랑전수관 운영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u>을 전승 보급시키기 위한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생략)</p> <p>1. "정선아리랑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u>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정선</u></p>	<p>제1조(목적) ---<u>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u>-----</p> <p>-----</p> <p>-----</p> <p>-----</p> <p>제2조(정의) (생략)</p> <p>1.-----<u>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u>-----</p>

현 행	개 정 안
아리랑 창 기능보유자의 전수 활동을 지원하여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 ----- ----- -.
2. "정선아리랑"이라 함은 지방에 전승되는 무형의 토착민요로서 <u>강원도지사</u> 가 지정한 지방 무형 문화재 제1호를 말한다.	2.----- ----- <u>강원특별자치도지사</u> ----- -----.

제35조(「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생 략) 1. (생 략) 가.~나. (생 략) 다. 국가, 도 및 군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 중 대한체육회, <u>강원도체육회</u> , 정선군체육회, <u>강원도교육청</u> , 정선군교육지원청이 인정하는 자 라.~마. (생 략)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u>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u> --- <u>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u> --- -----. 라.~마. (현행과 같음)

제36조(「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현 행	개 정 안
<p>당하는 지역</p> <p>4. “재정지원사업”이란 국가, 강원도 또는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급사업을 말한다.</p> <p>5.~7.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p> <p>4. ----- <u>강원특별자치도</u>----- ----- -----.</p> <p>5.~7. (현행과 같음)</p>

제38조(「정선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의2(물류보조금 지원) ① (생략)</p> <p>② 1항에 따른 물류보조금은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물류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③ (생략)</p> <p>1.~2. (생략)</p>	<p>제12조의2(물류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u>----- -----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p> <p>③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제39조(「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유치”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u>강원도</u>(이하</p>	<p>제2조(정의) (생략)</p> <p>1. ----- -----<u>강원특별자치도</u>-----</p>

<p>“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 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p> <p>2.~16. (생략)</p> <p>17. “주력업종”이란 군수가 <u>강원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p> <p>제11조(재원특례 및 중복지원금지)</p> <p>① 폐광지역의 투자유치보조금은 군수가 「<u>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u>」 제4조에 따라 교부받는 <u>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u>으로 한다</p> <p>② (생략)</p>	<p>----- ----- ----- ----- -----.</p> <p>2.~16. (현행과 같음)</p> <p>17. ----- <u>강원특별자치도지사</u>----- ----- -----.</p> <p>제11조(재원특례 및 중복지원금지)</p> <p>① ----- ---- 「<u>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u>」 ---- -----<u>강원특별자치도</u>----- -----.</p> <p>② (현행과 같음)</p>
--	---

제40조(「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5조(지급 대상) ① (생략)</p> <p>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u>강원도</u>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p> <p>② (생략)</p>	<p>제5조(지급 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1. ----- ----- <u>강원특별자치도</u>-----</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생 략)</p> <p>1.~3. (생 략)</p> <p>4. 그 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p>	<p>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 -----</p>
<p>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급하되, 금액은「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p> <p>②~③ (생 략)</p>	<p>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 -----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 -----.</p> <p>②~③ (현행과 같음)</p>

제41조(「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u>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u>이 취합·검토하여 정선군수에게 제출한다.</p> <p>1.~5. (생 략)</p>	<p>제5조(지원신청) ----- ----- -----<u>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u>----- -----.</p> <p>1.~5. (현행과 같음)</p>

제7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3.~8. (생략) ④ (생략)	제7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3.~8.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제42조(「정선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5조(정선군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 ① (생략) 1.~3. (생략) 4. 강원도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5. (생략) ② (생략)	제5조(정선군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강원특별자치도와 연계한 지방 녹색성장 추진체계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군수는 강원도에서 수립하는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 강원특별자치도 ----- ----- ----- ----- ----- -----

제43조(「정선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	-----

제11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② (생략) ③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u>강원도지사</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1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강원특별자치도</u> <u>지사</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	---

제44조(「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동강생태체험학습장(이하 “체험학습장”이라 한다) 이라 하고, 위치는 <u>강원도</u>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6번지에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동강생태체험학습장(이하 “체험학습장”이라 한다) 이라 하고, 위치는 <u>강원특별자치도</u>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6번지에 둔다.

제45조(「정선군자연환경보전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생태계의 보호·복원) 군수는 생태계보전지역, <u>강원도</u> 관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 (생략)	제5조(생태계의 보호·복원) ----- -----, <u>강원특별자치도</u> ----- -----, ----- ----- ----- -----. 1.~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연환경 조사) ① (생 략) ② (생 략) 1.~2. (생 략) 3.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 야생 동·식물, <u>강원도관리 야 생 동·식물과 국내고유 생물 종 의 서식현황</u> 4.~6. (생 략)	제6조(자연환경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 -----, <u>강원특별자치도</u> ----- ----- ----- 4.~6. (현행과 같음)

제47조(「정선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 <u>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u> 」 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2.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u>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u> 」----- 2. (현행과 같음)

제48조(「정선군 건축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능) ①~③ (생 략) ④ <u>강원도 건축위원회</u> 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 심의를 생략한다. ⑤ (생 략) 1.~5. (생 략)	제7조(기능) ①~③ (생 략) ④ <u>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u> ----- ----- ----- ⑤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제8조(구성) ①~② (생 략) ③ (생 략) 1. (생 략)	제8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2. (생 략)</p> <p>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u>강원도건축위원회</u>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p> <p>나.~바. (생 략)</p> <p>④ (생 략)</p> <p>제20조의2(건축물의 공사감리) 법 제25조제12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u>강원도 건축사회</u> 정선군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고시한다.</p> <p>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② (생 략)</p> <p>③ (생 략)</p> <p>1. 현장조사업무 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는 「<u>강원도 건축 조례</u>」 제29조에 따라 공개모집된 명부의 건축사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p> <p>2. 군수는 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p>	<p>2. (현행과 같음)</p> <p>가. ----- ----- -----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 -----.</p> <p>나.~바.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0조의2(건축물의 공사감리) ----- ----- -----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 <u>회</u>----- -----.</p> <p>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 ----- 「<u>강원 특별자치도 건축 조례</u>」----- ----- -----.</p> <p>2. ----- ----- -----</p>

6. 국가 또는 <u>강원도</u> 로부터의 보조금	6. ----- <u>강원특별자치도</u> -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제51조(「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생략) ② (생략) 1.~2. (생략) 3. 국가, <u>강원도</u> 또는 <u>군</u> 으로부터 신청대상 주택의 개선사업을 위하여 유사한 사업지원을 받은 적이 없거나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u>강원특별자치도</u> ----- ----- ----- -----.

제53조(「정선군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6조(수상자 예우) (생략) 1. 국가(중앙단위를 포함한다) 또는 <u>강원도</u>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2.~4. (생략)	제6조(지원 및 대상) (현행과 같음) 1. ----- ---- <u>강원특별자치도</u> ----- ----- 2.~4. (현행과 같음)

제54조(「정선군 농업회의소 운영·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5조(추진사업 및 범위) ① (생략) ② (생략) 1.~2. (생략) 3. 국가 또는 <u>강원도</u> 의 대행사업	제5조(추진사업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u>강원특별자치도</u> ----

<p>알선·지원, 군의 업무위탁 및 대행 4. (생략)</p>	<p>----- ----- 4. (현행과 같음)</p>
--	--

제55조(「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군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p>	<p>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p>

제56조(「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으뜸음식점"이라 함은 모범음식점 중 강원도시사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 (생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강원특별자치도지사-----. 3. (현행과 같음)</p>

제57조(「정선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생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7. (생 략) 8. “위생관련단체”란 중앙 또는 <u>강원도의</u> 위생업소 협회(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동종업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와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p>	<p>1~7. (현행과 같음) 8. ----- <u>강원특별자치도</u>----- ----- ----- ----- -----.</p>
---	--

제58조(「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설치·운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업) ① (생 략) 1~5. (생 략) ② (생 략) 1.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 <u>강원도</u> (이하 “도”라 한다) 또는 군의 대행사업 2~3. (생 략) ③ (생 략)</p>	<p>제5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u>강원특별</u> <u>자치도</u>----- ----- 2~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제59조(「정선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재원조성·운영) ① (생 략) ② 제1항의 사업비는 군 자체재원과 국가 및 <u>강원도</u> 보조금으로 한다.</p>	<p>제6조(재원조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u>강원특별자치도</u> ----- -----.</p>

제60조(「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	-------

<p>제2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p> <p>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u>강원도</u> 관할지역과 인접 생활권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p> <p>① ----- --<u>강원특별자치도</u>-----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	---

제61조(「정선군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5조(이용자 및 사업자 선정) ①~② (생략)</p> <p>③ 군수는 초·중·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u>강원도 정선교육지원청</u>과 협의하여 그 학생을 이용자로 선정할 수 있다.</p> <p>1.~3. (생략)</p> <p>④~⑤ (생략)</p>	<p>제5조(이용자 및 사업자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u> - ----- ----- -----</p> <p>1.~3.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

[별표]

청년활동 거점 공간 위치(제5조제2항 관련)

구분	청년활동 거점공간	위 치	비고
1	고한읍 거점 공간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46	
2	사북읍 거점 공간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36, 사북2리 마을회관 2층	
3	남면 거점 공간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도원2길 33, 제1동 2층	
4	임계면 거점 공간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10길 24-7	

[별지 제2호 서식]

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자(보호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지원결정 대상	성명	생년월일	급식제공기관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	
	급식지원 유형	※ 중복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연 중 : <input type="checkbox"/> 조식 <input type="checkbox"/> 중식 <input type="checkbox"/> 석식 <input type="checkbox"/> 학기 중 평 일 : <input type="checkbox"/> 조식 <input type="checkbox"/> 석식 <input type="checkbox"/> 토·공휴일 : <input type="checkbox"/> 조식 <input type="checkbox"/> 중식 <input type="checkbox"/> 석식 <input type="checkbox"/> 방학 중 : <input type="checkbox"/> 조식 <input type="checkbox"/> 중식 <input type="checkbox"/> 석식	
	급식지원 방법	<input type="checkbox"/>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input type="checkbox"/> 식품권 <input type="checkbox"/> 일반음식점 <input type="checkbox"/> 도시락 배달 <input type="checkbox"/> 부식 배달 <input type="checkbox"/> 기타 ()	아동급식카드 <input type="checkbox"/> 사용 사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문의전화번호 :

성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수

직인

[별표]

정선군 보육시설 명칭 및 위치(제12조 관련)

명 칭	위 치	설치연월일
정선어린이집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4길 8	1990. 4. 3.
사북어린이집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32	2004. 3. 1.
정선어린이집 화암분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1-5	2012. 9. 3.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4조제1항제6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총괄반	1)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본부장·부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황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군의회)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 :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답사례 등 확인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가)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 회의,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지원

		<p>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p> <p>라)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p> <p>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p> <p>바)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p> <p>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p> <p>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p> <p>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p> <p>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p> <p>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p> <p>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p> <p>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p>
	4) 행정지원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 가능 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p>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p> <p>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p> <p>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p> <p>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p> <p>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p> <p>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p>
	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p>가) 육상 및 하천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p> <p>나) 육상 및 하천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p> <p>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p> <p>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p>
	3) 긴급통신지원반	<p>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p> <p>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p> <p>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p>

	구축
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6) 재난수습 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군·구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리자 원 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 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책반	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p>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p> <p>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p> <p>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p>
9)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p>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p> <p>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p> <p>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p> <p>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p> <p>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p> <p>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p>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반		<p>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p> <p>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p> <p>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p> <p>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p>
11) 사회질서 유지반		<p>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p> <p>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p> <p>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p> <p>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p> <p>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p>
12) 수색·구조 구급반		<p>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p> <p>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p> <p>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p> <p>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p> <p>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p>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 난	1) 상황관리총괄팀	<p>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p> <p>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p> <p>다)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사고수습본부장</p>

상 황 총 괄 반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2) 수습상황 파악 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군·구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정선군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 기능 반	1)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2)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 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 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10) 자원봉사 지 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 반	
	12) 수색·구조 구 급반	
다. 재난대응협업반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업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	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별지 제1호서식】

화암동굴 관람권

(앞면)

관람권 ADMISSION TICKET	본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1회 사용가능 합니다.	화암관광지 Hwa-am tourist resort
일련번호: 발행 내역 발행일자: 합계금액:	절 취 선 동굴 전경사진	일련번호: 발행일자: 발행 내역 합계금액: 정선군 로고

(뒷면)

금과 대자연의 만남! 환상의 금광테마동굴	
<p>화암동굴은 1992년부터 1945년까지 금을 캐던 천포광산(泉浦鑛山)으로 당시 연간 순금 22,904g을 생산하는 국내 5위의 금광이었다.</p> <p>이 동굴은 당시 굴진작업 중 발견한 천연동굴과 금을 캐던 폐 광도를 추가 개발하여 공개한 테마동굴로서 금광개발에 따른 역사성과 2,800㎡의 자연동굴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굴의 총연장은 1,803m이다.</p> <p>이 동굴은 역사의 장(16개 Zone), 금맥따라 365, 동화의 나라(11개 Zone) 금의세계(13개 Zone), 대자연의 신비(자연동굴)로 5개장 41개 Zon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연동굴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국내 최초의 테마동굴이다.</p> <p>화암동굴은 강원특별자치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되어 있다.</p> <p>《안내 및 문의》 · 전화 : · 홈페이지 :</p>	

시설이용권(야영권)

(앞면)

야영권 ADMISSION TICKET 일련번호: 발행내역 발행일자: 합계금액:	본 야영권은 당일에 한하여 1회 사용가능 합니다. 절취선 전경사진	화암관광지 Hwa-am tourist resort 일련번호: 발행일자: 발행내역 합계금액: 정선군 로고
--	---	---

(뒷면)

<p style="text-align: center;">주변관광지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암8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경(화암약수), 제2경(거북바위), 제3경(용마소), 제4경(화암동굴), 제5경(화표주), 제6경(소금강), 제7경(물운대), 제8경(광대곡) ● 등산코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암약수 → 소금강 → 물운대 (3시간 소요) - 물운대 → 광대곡 (왕복 2시간) - 화암약수 → 불암사 → 구슬동 → 지역산 → 민동산 → 증산 (6시간 소요) - 화암약수 → 지역산 → 삼내약수(4시간 30분 소요) <p>《안내 및 문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홈페이지: 	
--	--

시설이용권(모노레일 승차권)

(앞면)

모노레일승차권 BOARDING TICKET 일련번호: 발행내역: 발행일자: 합계금액:	본 승차권은 당일에 한하여 1회 사용가능 합니다. 화암동굴 관람은 별도 관람권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절 취 선 모노레일카 전경사진	화암관광지 Hwa-am tourist resort 일련번호: 발행일자: 발행내역: 합계금액: 정선군 로고
--	--	--

(뒷면)

<p>정선 화암동굴의 신비로운 세계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p> <p>2,800㎡에 달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대광장으로 이루어진 천연동굴이 함께 하는 화암동굴에는 동양최대를 자랑하는 높이 28m의 황중유벽과 대석순, 대석주, 마치 빛어놓은 듯한 마리아상, 부처상, 장군석, 그리고 지금도 자라고 있는 석순, 석화, 곡석등 동굴 생성물들이 가득하여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석회석 동굴이며 또한, 금과 대자연, 동화속의 금깨비, 은깨비가 함께 어우러지는 국내최초의 테마형 동굴로서 5개장과 41개 ZONE으로 구성된 1,803㎡관람구간을 통하여 새롭고 다채로운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p> <p>《안내 및 문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화: · 홈페이지: 	
--	--

시설이용권(캐라반 사용권 원부)

<p>No</p> <p>캐라반 사용권 원부</p> <p>사 용 료: ₩ (금 원정)</p> <p>사용시설:</p> <p>사용기간: ~</p> <p>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p> <p>주소:</p> <p>성명: (인)</p> <p>년 월 일</p> <p>○ ○ ○ ○</p>	<p>No</p> <p>캐라반 사용권 원부</p> <p>사 용 료: ₩ (금 원정)</p> <p>사용시설:</p> <p>사용기간 : ~</p> <p>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p> <p>주소:</p> <p>성명: (인)</p> <p>년 월 일</p> <p>○ ○ ○ ○</p>	<p>○ 전면 캐라반 전경 및 관광질서 관련 표어</p> <p>○ 이면 시설현황 안내도 및 캠프장내 금지(유의)사항 등</p>
--	---	--

시설이용권(카트 이용권)

(앞면)

카트 이용권 BOARDING TICKET 일련번호: 발행내역: 발행일자: 합계금액:	본 이용권은 당일에 한하여 1회 사용가능 합니다. 화암동굴 관람은 별도 관람권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절 취 선 카트체험장 전경사진	화암관광지 Hwa-am tourist resort 일련번호: 발행일자: 발행내역: 합계금액: 정선군 로고
---	--	--

(뒷면)

<p>정선 화암동굴의 신비로운 세계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p> <p>2,800㎡에 달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대광장으로 이루어진 천연동굴이 함께 하는 화암동굴에는 동양최대를 자랑하는 높이 28m의 황중유벽과 대석순, 대석주, 마치 빗어놓은 듯한 마리아상, 부처상, 장군석, 그리고 지금도 자라고 있는 석순, 석화, 곡석등 동굴 생성물들이 가득하여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석회석 동굴이며 또한, 금과 대자연, 동화속의 금개비, 은개비가 함께 어우러지는 국내최초의 테마형 동굴로서 5개장과 41개 ZONE으로 구성된 1,803㎡관람구간을 통하여 새롭고 다채로운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p> <p>《안내 및 문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화 : · 홈페이지 : 	
--	--

[별표 1]

위치 및 기능

구 분	내 용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6번지 일원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통한 목재문화의 진흥 ·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 목재를 포함한 산림자원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홍보 · 목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지원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 전시체험관, 목재 놀이터, 목공체험실(창고), 야외교육장 · 무장애 데크경사로, 그 밖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별표 1]

정선군 임대아파트 위치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고한임대아파트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 10길 28-14	
사북임대아파트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35	
해피아리아파트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 10길 28-23	
여미솔아파트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의림로 233	
고한행복주택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 10길 28-24	

□ 제안이유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정선군 자치법규 제명 및 조문을 특별법에 맞춰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강원도 명칭 변경사항 정비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강원도(이하 “도” 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 라 한다)
-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제289회 정선군의회(2023. 5. 30.)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5. 12.)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59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국내·외 출장”으로, “규정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여비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내여행”을 “국내·외 출장”으로,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를 “여비는 영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2배”를 각각 “5배”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정선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를 “「정선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동조제2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동조제4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동조제3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사항은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 -----.</p>
<p>1. ~ 3.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정선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p>	<p>4. ----- ----- 「정선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p>
<p>5.·6. (생략)</p>	<p>5.·6. (현행과 같음)</p>
<p>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7. ----- ----- <u>같은 조 제2항</u> ----- ----- <u>같은 조 제4항</u> ----- ----- <u>같은 조 제3항</u> ----- -----.</p>
<p>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한다.</p> <p><본조제목개정 2013.06.05.,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5.07. 06.>.</p>	

제안이유

- 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 출장시 소요되는 출장여비를 물가수준에 맞게 조정하여 공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 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한을 부정 수령액의 5배로 상향 조정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시 운임과 숙박비 등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로 근거를 명시함(안 제4조)
 -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삭제
- 나.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금 5배 상향(안 제5조)
 - 법률에 맞게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을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제289회 정선군의회(2023. 5. 30.),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5. 12.) 및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8.)에서 의결된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60호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선아리랑상품권 환급액은 지급대상의 구분 없이 5,000원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관광패키지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③ 정선군에서 주관·주최·후원하는 주요 행사, 축제, 이벤트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할인하는 경우 할인범위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환급 여부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이용료를 할인 받은 경우 단체이용요금 할인 등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이용료) ① (생 략)</p> <p>② 군수는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p>	<p>제8조(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이 경우, 정선아리랑상품권 환급액은 지급대상의 구분 없이 5,000원으로 한다.</p>
<p>제11조(이용료의 할인)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11조(이용료의 할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군수는 관광패키지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p> <p>③ 정선군에서 주관·주최·후원하는 주요 행사, 축제, 이벤트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할인하는 경우 할인범위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환급 여부는 군수가 따로 정한</p>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다.</u> <u>⑤ 이용료를 할인 받은 경우 단</u> <u>체이용요금 할인 등 중복할인은</u> <u>적용하지 아니한다.</u>

[별표 2]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이용료

1. 일반요금

구 분	이용료(원)	
	개인	단체(20명 이상)
가. 대인(1명)	15,000	14,000
나. 소인(1명)	11,000	10,000

※ 비고

- 위 표에 따른 요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대인 이용료: 만 13세 이상인 사람
 - 소인 이용료: 만 13세 미만인 사람. 다만, 보호자가 동반한 만 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하여는 보호자 1명 당 영아 1명의 이용료를 면제한다.
- 케이블카 이용료는 왕복 이용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이용자가 편도구간만 탑승하였더라도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2. 할인요금

구 분	이용료(원)	
가. 정선군민 및 정선군 자매도시 주민 및 폐광지역강원남부권 시군 주민	1) 대인(1명)	10,000원
	2) 소인(1명)	8,000원
나. 장애인(1명)	1) 대인(1명)	10,000원
	2) 소인(1명)	8,000원
다. 국가유공자 등(1명)	10,000원	
라. 65세 이상인 사람(1명)	10,000원	

※ 비고

- 위 표 가목에서 정선군 자매도시 주민이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위 표 나목에서 장애인 할인요금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제안이유

- 가. 국가적 자산이며 올림픽 유산인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조례 개정으로 가리왕산 케이블카 이용료 인상 및 상품권 환급, 이용료 할인 등과 관련 세부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가리왕산 케이블카 이용료 인상(별표 2)
- 나. 가리왕산 케이블카 이용료에 상품권 환급규정 반영(안 제8조제2항)
- 상품권 환급액은 지급대상의 구분 없이 일괄 5,000원 지급
- 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할인 규정 신설
- 1) 관광패키지상품 개발시 이용료를 할인(안 제11조제2항)
 - 2) 주요 행사, 축제, 이벤트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에 한하여 이용료를 할인(안 제11조제3항)
- 라. 가리왕산 케이블카 중복할인 불가 내용 신설(안 제11조제5항)

제289회 정선군의회(2023. 5. 30.)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5. 12.)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61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일간신문과” 를 “일간신문이나” 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 를 “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 로 한다.

제13조제3호 중 “차목·타목 및 과목” 을 “거목·더목 및 러목” 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5호 중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를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 로 한다.

제28조제3항제3호 중 “차목·타목 및 과목” 을 “거목·더목 및 러목”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1부터 9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제2항제6호 중 “제3항제6호” 를 “제4항제6호”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84조의2제2항” 을 “영 제84조의2제3항” 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10년” 을 “8년” 으로 한다.

제57조제2호 중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를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u>일간신문</u>과 군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p>	<p>제7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 ----- ----- <u>일간신문</u>이나 -----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경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제6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 ----- ----- ----- ----- ----- ----- ----- ----- ----- -----.</p>
<p>2. <u>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u></p>	<p>2. -----<u>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u> ----- ----- -----</p>

현 행	개 정 안
<p>3. ~ 13. (생 략)</p> <p>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p> <p>1.·2. (생 략)</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과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p> <p>4. (생 략)</p>	<p>3. ~ 13. (현행과 같음)</p> <p>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 ----- -----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거목·더목 및 러목</u> --- ----- ----- ----- -----</p> <p>4. (현행과 같음)</p>
<p>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 ① (생 략)</p> <p>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p>	<p>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현 행	개 정 안
<p>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p>
<p>1. ~ 3.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삭제</p>	
<p>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③ ----- ----- ----- ----- ----- ----- ----- ----- ----- ----- -----.</p>
<p>1.·2. (생략)</p>	<p>1.·2. (현행과 같음)</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과목의 시설은 제외한다)</p>	<p>3.----- ----- --- <u>거목·더목 및 러목</u> --- -----</p>
<p>4. ~ 6. (생략)</p>	<p>4. ~ 6. (현행과 같음)</p>
<p><신설></p>	<p>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 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신설></p>	<p>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신 설></u></p> <p>제52조(건폐율 강화 및 완화) ① (생 략) ② 영 제84조제6항에 따른 건축 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 5. (생 략)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p>	<p><u>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 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 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p> <p>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u>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 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 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 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 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p> <p>10. 1부터 9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 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 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 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p> <p>제52조(건폐율 강화 및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 -----.</p> <p>1. ~ 5. (현행과 같음) 6. -----</p>

현 행	개 정 안
<p>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결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p>	<p>----- ----- ----- ----- <u>제4항제6호</u>----- ----- ----- ----- ----- ----- ----- ----- -----</p>
<p>7.·8. (생략)</p>	<p>7.·8. (현행과 같음)</p>
<p>③ ~ ⑤ (생략)</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p>	<p>⑥ 영 제84조의2제3항----- ----- ----- ----- ----- ----- ----- ----- ----- -----</p>

현 행	개 정 안
<p>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p> <p>③·④ (생 략)</p> <p>제57조(설치 및 기능) 군수가 법 제113조제2항 및 영 제1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계획위원회(이하 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생 략)</p> <p>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u>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u>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p> <p>3·4. (생 략)</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57조(설치 및 기능)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u>----- -----</p> <p>3·4. (현행과 같음)</p>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선군 군계획 조례」에 반영(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시·군관리계획안 주민 의견청취 방법 간소화(안 제7조)

- 도시·군관리계획안 주민 의견청취 시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안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하였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군보를 선택하여 공고 가능함을 명시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반영

- (안 제9조, 안 제13조, 안 제28조, 안 제52조, 안 제53조)

다. 중소기업부 규제개선 권고사항 반영(안 제28조)

- 중소기업부 규제개선 권고사항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대상 확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만큼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규제완화 도모

제289회 정선군의회(2023. 5. 30.)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5. 12.)에서 의결된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62호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 중인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 중이거나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7조제2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30㎡당 1대(시설면적/13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 다만,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호(실)당 0.7대 이상으로 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 - 가구(호실)당 1대,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0.7대 이상 ○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 전용면적 60㎡ 이하 : 세대당 1대 이상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세대당 1.3대 이상 - 전용면적 85㎡ 초과 : 세대 전용면적 60㎡당 1대 이상 ※ 세대는 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하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

- 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조례에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설물 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

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 제안이유

- 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분화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허가 시 현실성 있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나. 일부 시설물(공동주택 50호 이상)의 경우 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장 추가 확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변경(별표 3)

- 1) 5호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기준 세분화
- 2) 비고 8호 내용 변경

시설물	설치기준 (변경 전)	설치기준 (변경 후)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 가구(호실)당 1대,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한다. ○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 세대당 1.5대 이상 ○ 세대는 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하며,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 - 가구(호실)당 1대,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0.7대 이상 ○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 전용면적 60㎡ 이하 : 세대당 1대 이상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세대당 1.3대 이상 - 전용면적 85㎡ 초과 : 세대 전용면적 60㎡당 1대 이상 ※ 세대는 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하며,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비 고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조례에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설물 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규 칙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5. 1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규칙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81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규칙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정선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의 개정) 정선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정선군 자체 감사 규칙」의 개정) 정선군 자체 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정선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개정) 정선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정선군 국가보

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18호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 중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조례」”로 한다.

제9조(「정선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규칙」의 개정) 정선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원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한다.

제10조(「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2조(「정선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 정선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정선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① ~ ③ (생략) ④기획관은 제3항에 따라 이송 받은 조례안을 법 제35조에 따라 <u>강원도지사</u> (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이 원안과 다르게 의결되었을 경우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23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강원특별자치도지사</u> ----- ----- ----- -----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정선군 자체 감사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중복감사의 지양) 군수는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 감사, <u>강원도</u>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8조(중복감사의 지양) ----- ----- <u>강원특별자치도</u>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투자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u>강원도지사</u> (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8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 ----- ----- ----- ----- <u>강원특별자치도지사</u>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증상표 사용심사 등) ① · ② (생략)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관계법 및 조례에 의하여 인증(보증)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중복되는 표준규격의 각종 검사와 품질시험 및 성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2. (생략) 3. 「 <u>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조례</u> 」 제4조에 따른 품질보증 품목 4. (생략)	제9조(보증상표 사용심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u>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조례</u> 」 제4조----- 4. (현행과 같음)

제9조(「정선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능) ① (생 략)</p> <p>②심의회 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u>강원도농업산·학협동 심의회</u>(이하 “도 심의회” 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 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 할 수 있다.</p>	<p>제4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강원특별자치도농업산·학협 동심의회</u>----- ----- ----- ----- ----- -----.</p>

제12조(「정선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p>1.·2. (생 략)</p> <p>3. <u>강원도</u>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에 제출하는 보고서</p> <p>4. (생 략)</p>	<p>제2조(기능)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강원특별자치도</u> ----- -----</p> <p>4. (현행과 같음)</p>

[별지 제7호서식]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청 구 인 명 부 (표지)
(책 권)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읍·면

청구인대표자 (서명·날인)

수 임 인 (서명·날인)

※작성요령

- (1)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 (2) 명부는 책(읍·면별 구분)과 권(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으로 구분하여 분철하고, 수임인은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인을 기재한다.

청 구 인 명 부 (명부)

(책 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읍·면)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날인	서명일자	비고

※작성요령

-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다.
-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호수를 기재한다.
- 4. 서명·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 또는 인장을 날인한다.
-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는 그 취소일자를 기재한다.

[별지 제13호서식](앞면)

소송수행자 지정서 (행정소송)

법원 및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위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아래의 사람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근무기관 : 정선군청

소 재 지 : (우)2613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1) 근무부서 :

성 명 :

FAX :

전화번호 :

(2) 근무부서 :

성 명 :

FAX :

전화번호 :

(3) 근무부서 :

성 명 :

FAX :

전화번호 :

20 . . .

정 선 군 수

(뒷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전 지휘 요청
- 소장·준비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 소송진행중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거나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반소장 사본 또는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소취하·화해·청구의 포기 및 인락·민사소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시 사전 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39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41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결정·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 상소의 제기 및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60조제1항 단서 및 제395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시 사전 지휘 요청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 (민사조정법 제34조 참조) 시 사전 지휘 요청
-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결정·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동시에 승소 확정된 이행판결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하고 확인판결, 형성판결, 기타 결정·명령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후 절차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통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③ “을 “이 “갑 “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납된 사용료의 3%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을 “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경과 후에도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 “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비용공제금지) “을 “이 “갑 “에게 지불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여하한 종류의 제세공과금(각종 원천과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모든 제세와 부과금을 포함한다)이나 비용이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계약의 해지·취소) ① “갑 “과 “을 “ 쌍방은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면통지으로써 이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 해지의 발생시기는 민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③ 이 계약에 의한 해지는 “갑 “이 “을 “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또는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해지에 앞서 “을 “의 채무의 이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상징물의 사용중지) 이 계약의 종료나 기타 사유로 기한 전 해지시 “을 “에 대한 모든 권리는 그와 함께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갑 “에게 귀속되고, “을 “은 즉시 상징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5조(통지) 이 계약에 의거한 모든 통지사항과 의사표시는 서면에 의한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는 민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제 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은 년 월 일에 발효되고, 년 월 일에 종료된다.

② “을 “이 “갑 “에게 계약연장 신청을 위한 “갑 “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을 “은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관할법원) ①이 계약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 관할 법원은 “갑 “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상호간의 신의와 성실로 본 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 “과 “을 “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갑 (정선군수)

을(상징물사용자)

o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o 주소 :

o 대표 : 정선군수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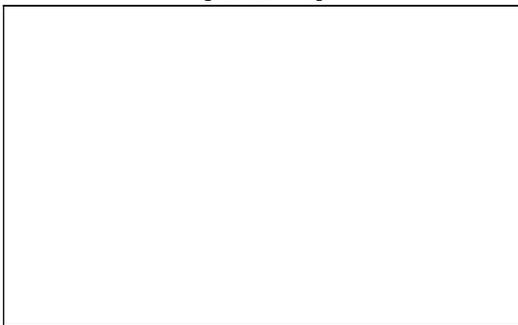
o 대표 :

[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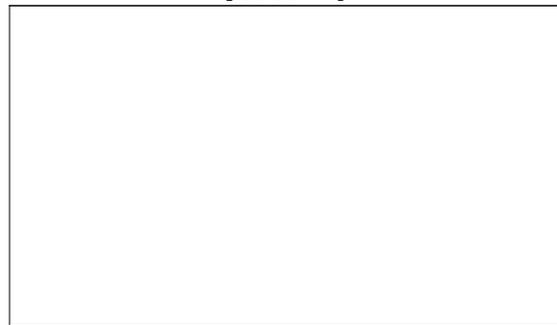
상징물의 내용

- 1. 상징물 구분 :
- 2. 상징물 사용 물품(제품)지정 :
- 3. 상징물의 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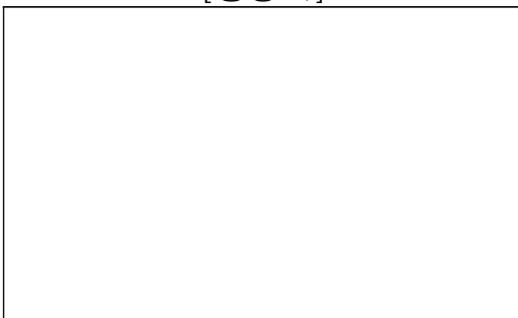
[형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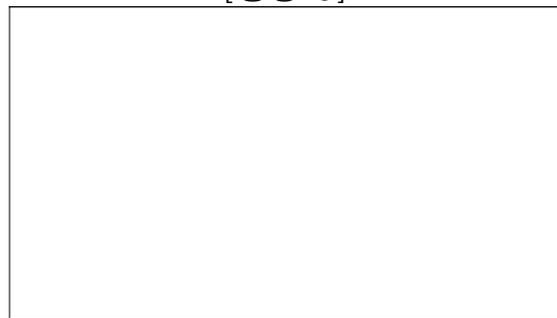
[형상 2]



[형상 4]



[형상 5]



[형상 5]



[형상 6]



[별표]

단 위 사 무 별 전 결 사 항(제4조제1항 관련)

담당관·과·소	단 위 업 무 명	전 결 구 분					군수
		담당자	담당	과장	소장	부군수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101. 보급종 신청 및 보급						
	가. 정부보급종 신청 및 공급관리	기안			○		
	나. 강원특별자치도산, 자체 보급종 공급관리	기안			○		
	102. 벼농사						
	가. 병해충 관리 및 방제지원	기안			○		
	나. 신기술 보급 및 기술지원	기안			○		
	103. 병해충 방제						
	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및 기술지도	기안			○		
	나. 공적 방제단 구성 및 운영	기안			○		
	다.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기안			○		
	104. 전작물 재배 기술지도	기안			○		
	105. 농약안전 사용지도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106. 농업기상 관측						
	가. 농업기상 관측 운영	기안			○		
	나. 농업기상 재해 관리지도	기안			○		
	107. 환경농업						
	가.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기안			○		
	나. 친환경농업 육성지도	기안			○		
	108. 토양, 식물체 분석						
	가. 종합검정실 운영	기안			○		
나. 토양 및 유식물체 성분분석	기안			○			
다. 지력증진 및 시비기술 지도(변경)	기안			○			
라. 토양관리 전산화 및 시비처방서 발급	기안			○			

109. 과수재배						
가. 과수재배 기술지도 계획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지역적응 품종개발	기안				○	
다. 과수시범포 및 소과류 시범포 운영	기안				○	
라. 기후 온난화 대응작목 연구	기안				○	
110. 특화작목 재배 신기술 보급지도	기안				○	
111. 산채류 및 약용작물						
가. 산채류 재배 기술지도	기안				○	
나. 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기안				○	
다. 고품질 약용작물(인삼, 황기 등)재배 기술지도	기안				○	
라. 특용작물 지역적응 품종 개발	기안				○	
112. 원예작물						
가. 원예작물 지역특화시범사업	기안				○	
나. 원예작물 생산 기술지도	기안				○	
다. 시설채소 생산관리 지도	기안				○	
라. 원예작물 생육상황 조사 분석	기안				○	
113. 화훼단지 수출농업						
가. 수출화훼단지 조성관리 계획수립	기안				○	
114. 특화작목 품질 향상 연구						
가. 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행	기안				○	
나. 지역특화작목 품질향상 계획수립 및 시행	기안				○	
115. 신소득 대체작목 개발(수정)						
가. 지역특화 신작목 개발 계획수립 및 조정	기안	기안				○
나. 지역특화 신작목 개발사업 시행	기안				○	
다. 지역특화 신작목 증식기술 연구 계획수립	기안				○	
라. 지역특화 신작목 증식기술 연구수행	기안				○	
116. 수출작목 육성 기술지도						
가. 수출작목 개발	기안				○	

117. 지역농업특성화	기안			○		
118. 향토산업 육성						
가. 향토음식 및 식품개발 연구	기안			○		
119. 유전자원 증식기술 개발	기안			○		
120. 민동산 역사 증식 및 보존사업	기안			○		
121. 6차산업 육성 및 지도	기안			○		
122. 유용곤충산업화 계획 및 기술지도	기안			○		
123. 농특산물 저장기술						
가. 농특산물 저장기술 연구계획 수립	기안			○		
나. 농특산물 저장기술 연구 수행	기안			○		
124.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계획수립 및 운영						
가. 농특산물 가공품연구 및 상품화 지원	기안			○		
나. 가공상품 디자인 개발	기안			○		
다. 전통발효 기술연구	기안			○		
125.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						
가. 친환경미생물 배양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나. 친환경 생물 배양 및 공급	기안			○		
126. 지역전략작목 협력사업	기안			○		
127. 발효축진제조시설 운영	기안			○		
128. 식품가공실 및 성분분석실 운영	기안			○		
129. 과학영농체험 시설 운영	기안			○		
130. 오가피가공교육장 및 향토육성산업 시설관리	기안			○		
131. 농업인 애로기술 지도	기안			○		
132. 축산지도						
가. 축산기술 지도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축산기술 연구 · 지도	기안			○		
다. 축산기술 시범사업 및 가속사양관리지도	기안			○		
라. 유용곤충산업화 및 기술지도	기안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0.05.>

■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전화번호: , 휴대폰:)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와의 관계	
	예금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1통.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호국보훈수당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남,여)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전화번호)			
변동 사항	주소				
	계좌번호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p>「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정선군수 귀하</p>					
신청인 제출서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p>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참전등록번호			
호국보훈수당 (수령포기 · 자격회복)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전화번호)	
예금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의 (수령포기 · 자격회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자격회복신청서)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자격회복신청서)	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11.16.]

참전유공자 공로·배우자 수당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남,여)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전화번호)			
변동 사항	주소				
	계좌번호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p>「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정선군수 귀하</p>					
신청인 제출서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p>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0.11.16.]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공로·배우자수당 (수령포기·자격회복)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전화번호)	
예금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p>「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공로·배우자수당의 (수령포기 · 자격회복)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정선군수 귀하</p>			
신청인 제출서류 (자격회복신청서)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배우자수당 신청 시)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자격회복신청서)	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p>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16.12.22., 2017.6.29.>

본사이전보조금 신청서(제3조, 제11조, 제14조 관련)

신청인	회사명		전화 (팩스)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면적(m ²)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 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사업개시일

본 사 이 전 내 역

구분	이 전 前	이 전 後
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		
소재지		
실질적 근무인원(명)		
투자액(천원)		
직접사용면적(m ²)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m ²)	

보조금 신청액(천원)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22., 2017.6.29.>

투자보조금 신청서(제4조, 제11조, 제14조 관련)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대			입지유형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이전 또는 신.증설부 문	<input type="checkbox"/> 공장 (<input type="checkbox"/>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기간	본사: 년 월(. .), 공장: 년 월(. .), 연구소: 년 월(.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 금액(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m ²)		원
사업면적(m ²)	부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사업개시 (예정)일	
		착공(예정)일			
업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총투자금액 (부지+설비)		원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		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건축비(A)	원	시설장비구입비(B)	원	기반시설 설치비(C)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부담금	원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 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

-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2.22., 2017.6.29.>

임대료(□건물 □토지) 보조금 신청서(제6조, 제11조, 제14조 관련)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화	
			팩스	

이 전 내 역

이전 전 소재지	
이전 후 소재지	
근무인원	본사 : 명(연구소 포함)
	공장 : 명
임대내역 □ 건물 □ 토지	임대료 : 천원(원/m ²)
	임대면적 : m ²
	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 신청액(천원)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2.22., 2017.6.29.>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제7조, 제14조 관련)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본사소재지	전화	E-mail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분양 <input type="checkbox"/> 매입	입지유형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투자유형 (이전 또는 신.증 설부분)	<input type="checkbox"/> 이전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증 설
	<input type="checkbox"/> 공장(<input type="checkbox"/>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기간	본사: 년 월(월(.)), 공장: 년 월(. .), 연구소: 년 월(월(.))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천원	분양(매입)금액(원/m ²)	천원
사업면적(m ²)	부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율(%)
이전 또는 신.증 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 설 후(後)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 투자금액(부지 +설비)	천원	이전(신.증설)전 용인원	상시고 용인원
설비투자금액 (A+B+C)	천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건축비(A)	천원	시설장비구입비 (B)	천원
			기반시설설치비 (C)
보조금신청액	천원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22.>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변경) 요청서(제8조, 제14조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업투자촉진지구지정(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1. 촉진지구의 명칭 :

2. 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위치 및 면적) :

3. 지구지정의 기본방향(변경) :

4. 대상지역 안의 인구, 산업, 토지이용현황 : 별지참조

5. 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6. 다른 지역개발 계획의 내용 및 사업 연계방안 : 별지

붙임

1. 위치도 및 경계를 표시한 축척 1/5,000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2. 지적도 및 임야도
3.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4.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서류 및 도면
5. 사업별 투자계획(개별입지)
6. 현황사진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2.22., 2017.6.29.>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서(제9조, 제14조 관련)

신청인	투자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팩스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대		입지유형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투자부문	<input type="checkbox"/> 공장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투자 전(前) 소재지			투자지역 소재지			
부지매입 금액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m ²)		원		
분양(매입)면적(m ²)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부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 면적률(%)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착공(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천원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천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건축비(㉠)	천원	시설장비구입비(㉡)	천원	기반시설설치비(㉢)	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부담금	천원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 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시군 부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12.22., 2017.6.29.>

고용보조금 신청서(제11조, 제14조 관련)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본사소재지		전화	
			팩스	
투자내용	신고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투자금액		천원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대		
입지유형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이전부문	<input type="checkbox"/> 공장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설립일		등록일		
주생산물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	총인원 : 명	신규고용 : 명	기고용 : 명	
보조금신청액	천원			
지자체분담금	천원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 사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2.22., 2017.6.29.>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제11조, 제14조 관련)

신청인	기업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본사소재지			전화		
			팩스			
기업투자내용	투자완료일					
	업종(분류번호)					
	투자금액		원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대				
입지유형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이전부문	<input type="checkbox"/> 공장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최초설립일			사업개시일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	유치시 인원	명	신규고용인원	명		
	신청시 인원	명	이전 후 인원	명		
교육훈련기관			총 소요액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	원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12.22., 2017.6.29.>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 신청서
(구분 : 차)

1. 기업개요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국내 투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
지원대상자		지분 참여비율(%)		
입주 유형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대	입지 유형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복귀 유형		<input type="checkbox"/> 복귀 전 부분 철수 <input type="checkbox"/> 복귀 전 전부 철수 <input type="checkbox"/> 복귀 후 전부 철수 <input type="checkbox"/> 복귀 후 부분 철수		

2. 국외 사업장 현황(관계 증명용)											
투자자명 (지원대상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법인명					소재지						
업종(업태)					HS 코드						
국내 사업장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국내법인의종속회사 <input type="checkbox"/> 개인의 피투자회사				복귀직전 지분율						
지분변동 여부	<input type="checkbox"/> 변동 <input type="checkbox"/> 2년간 변동없음				지분변동사유				<input type="checkbox"/> 양도 <input type="checkbox"/> 증자 <input type="checkbox"/> 감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최초 해외직접투자일					국외 사업장 개시일						
철수 유형	<input type="checkbox"/> 청산 <input type="checkbox"/> 자산·지분양도 <input type="checkbox"/> 생산량 감축				청산·양도일						
(부분철수시) 해외사업장 생산계획	연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생산량										

*보조금 신청연도 기재(예: '16. 6월 보조금 신청시 '16년 기재)

3. 보조금 지원 유형				
보조금 유형	<input type="checkbox"/> 입지지원 <input type="checkbox"/> 투자지원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input type="checkbox"/> 공장 (<input type="checkbox"/>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기간	본사 : 년 월(. .), 공장 : 년 월 (. .), 연구소 : 년 월(. .)			
국내복귀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사업면적(㎡)	부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국내복귀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사업개시(예정)일	
	착공(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총투자금액 (부지+설비)	원		유치시 고용인원	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		
건축비(A)	원	시설장비 구입비(B)	원	기반시설설치비(C)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	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p>「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업체대표 (인)</p> <p>정선군수 귀하</p>				
<p>※ 첨부서류</p> <p>1.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2. 부분 철수 : 부분철수계획서, 부분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p>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12.22., 2017.6.29.>

폐광지역 투자기업 물류보조금 신청서(제11조, 제14조 관련)

신 청 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화	
				FAX	
공 장 소 재 지			업종		
	(농공단지명:)		산업분류번호		
공장규모 (㎡)	부지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면적	공장가동개시일	
물류운송 내역	자가용 운송		영업용 운송		
신청액	원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면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제품운송 거래 내역서 포함) 1부
2. 추정재무제표,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확인원) 1부
3. 차량등록증명서(자가운송시) 1부
4. 기타증빙서류(재무제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 1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12.22., 2017.6.29.>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제12조, 제14조 관련)

신 청 인	상호 및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E-mail				
사업계획 승인일		관광사업 등록일		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			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	총 인원 : 명	도내 신규고용 인원 (명)	기존 고용인원 (명)	

관광사업 투자내역

구 분	투자금액	비고
합 계		
토지구입비		
건 축 비		
기반시설설치비		
기 타		
보조금 신청액	천원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 협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별지 제17호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제14조 관련)

○○(주)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을 ○○시 ○○동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동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위 치 :
- 이전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확인인)

주 소 :

소 속 : 정 선 군 수

상 호 :

직 위 :

대표자: (인)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12.22.>

관광사업 투자 이행각서(제14조 관련)

○○는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도 ○○군 ○○읍·면 ○○번지에 제출한 사업계획 대로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내용을 불이행하거나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도 조례 제24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및 군 조례 제22조(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에 의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약속합니다.

- 위 치 :
- 투자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자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

임 대 인		임 차 인	
정선군수		주 소	
		성명(성별)	(남, 여)
		전화번호 ☎	H·P
임 대 차 농 업 기 계			
농 기 계 명		수 량	
부속작업기		수 량	
		수 량	
		수 량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		
임 대 료	₩ 원		
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			
작업종류			
작업면적	ha(일 평)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업기계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3. 사용 후 보관할 경우에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경우)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한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7. 농업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청소 등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해야 하며 고장 유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임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9.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를 대상으로 농업기계종합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 대 인 정 선 군 수 인 또는 서명

임 차 인

인 또는 서명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 ☎(033) 562-1222 홈페이지

<http://js.amlend.kr>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0.05.>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위탁관리 신청서

위탁 대상 시설	시설명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건물연면적	586.6㎡ (지하1층,지상1층)
	주요시설	터미널(사무실,식당,매점, 매표소), 승,하차장, 차량정비동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73-12번지		
위탁 관리 신청인	법인,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총 자산	백만원(고정자산 , 유동자산)		

위와 같이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 | | |
|----------|---|
| 첨부
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2. 신청자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
|----------|---|

제안이유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정선군 자치법규 제명 및 조문을 특별법에 맞춰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강원도 명칭 변경사항 정비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강원도(이하 “도” 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 라 한다)
-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